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158052 판결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식

피고1. B

2. C

3. D

피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639,939원, 피고 C, D는 각 4,426,62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2.부터 2024.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65,994,019원, 피고 C, D는 각 43,996,0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1. 1. 망 E과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망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인은 덤프트럭을 임대인의 사업장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의 운행에 제공할 수 없다.

- 보증금 3,600만 원(계약 종료 시 반환하되,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월 사용료 3,427,485원

- 제세공과금, 보험료 기타 유지관리비는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 계약기간 2023. 2. 1.부터 2026. 1. 31.까지.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기간 만료 전 파기를 원할 경우 상호 협의 후 파기할 수 있고 보증금과 차량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차량을 인도한다.

- 임차인의 부주의로 덤프트럭이 파손, 멸실, 훼손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업장의 업무를 책임 있게 배차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배차 받은 업무를 책임 있게 이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성금을 지불한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보증금 중 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2023. 8. 3.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추락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2023. 8. 29.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차량 수리비가불금과 보험료 합계 9,177,500원, 타이어 교체비 2,960,000원, 구난 견인비 9,024,000원을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이 대내적 관계에서 망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덤프트럭에 대한 지입계약이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덤프트럭에 대한 미지급 매매잔금 합계 102,824,545원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2024. 1. 25.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덤프트럭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들에게 덤프트럭 수리비나 각종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성격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임차하고 계약기간 동안 덤프트럭 구입비용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며,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원고가 배정하는 운송 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원고의 사업장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여 두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 동안 사용료를 모두 납부할 경우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기간 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다만 상호 협의 후 임대인에게 덤프트럭과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과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관계를 덤프트럭에 대한 임대차로 명시한 점 등 계약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대내적 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망인이 원고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되, 계약기간 동안 구매비용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계약 종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특수한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운송 업무를 하고 운송료를 받는 내용의 위임계약이 결합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덤프트럭의 임대 및 사용료 지불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사망이 임대차의 종료사유는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 중 덤프트럭의 임대와 관련한 부분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망인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사고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망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상속인인 피고들은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업상 업무를 위하여서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 제한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4. 1. 25.자 준비서면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24. 1. 26.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보증금 및 사용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이 2024. 1. 26.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3. 8.분부터 계약 종료일인 2024. 1. 26.까지의 사용료

20,012,089원($=3,427,485 \times 5 + 3,427,485 \times 26/3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망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의미에서의 이른바 지입약정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덤프트럭 구입비용의 일시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인정을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리비 가불금, 보험료, 타이어 교체비, 구난 견인비 원고와 망인이 계약기간 중 덤프트럭에 대한 유지관리비, 보험료 등은 모두 망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차량 수리를 위한 비용으로 망인에게 8,197,780원을 빌려주고, 보험료 979,720원, 타이어 교체비 2,960,000원, 견인비로 9,024,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비용들은 모두 이 사건 덤프트럭의 유지관리비나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종료 전 발생한 유지관리비 등 합계

21,161,500원($=9,177,500 + 2,960,000 + 9,024,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목적물의 사용수익 불능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거절

망인의 추락사고일인 2023. 8. 3. 이후부터는 덤프트럭이 훼손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로 피고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2023. 8. 4. 이후의 사용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3. 8. 1.부터 2023. 8. 3.까지의 사용료 331,692원($=3,427,485 \times 3/31$)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보증금 공제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가 자신들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을

원고의 사용료 등 청구권에서 보증금 6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사용료 등 청구권에서 피고들의 보증금 600만 원을 공제한다(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나, 이는 약정해지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것이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로 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속한정승인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6,639,939원 $\{=(331,692+21,161,500-6,000,000)\times 3/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피고 C, D는 각 4,426,626원 $\{=(331,692+21,161,500-6,000,000)\times 2/7\}$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 1. 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상법상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진희